대전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146700 판결 [손해배상(기)]

사 건 2022가단14670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경선

피고 1. B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채림

변론종결 2023. 3. 16.(피고 1.에 대하여)

2023. 5. 11.(피고 2.에 대하여)

판결선고 2023. 6. 22.

# 주 문

1. 워고에게.

가. 피고 B은 33,31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3. 4.부터 2023.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3,32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3. 4.부터 2023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40%, 위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
-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3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가전, 정보기기제품 등의 소매 및 도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D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피고 B은 피고회사의 피용자로서 2021. 9.경부터 2022. 3.경까지 위 'D매장'대전 판암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B은 2022. 3. 2. 11:00경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TV, 냉장고, E, F 등의 모델명과 혜택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면서 "현금가 피드백을 주기로 했다. 기본시 1851만원 701만원 캐시백, 1.5배시 2776만원 1776.5만원이라고 합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할인율에 대해 다시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고 B은 2022. 3. 4. 10:30경 원고에게 재차 "기존 설명드렸던 최종금액에 금주 한정 추가판촉진행을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품의진행 후 차주에 작성된다"고 말하면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이체를 요구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22. 3. 4. 피고 B에게 전자제품 대금으로 33,318,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개인 채무 변제나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전제품 구입 절차를 진행하여 원고에게 가전제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자제품을 구입하면 직원 할인가와의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가전제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33,31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의 혐의로 2022. 9. 6. 공소제기되었다(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0163호). 피고 B은 2023. 2. 16.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22고합35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

- 1)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33,318,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2) 피고 B의 위 불법행위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의 지위에서 한 가전제품 매매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진다.
-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31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 1) 피고 회사는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 점, 피고 회사는 정도 경영방침에 따라 결제관련 유의사항을 고객들에게 고지하고 있는 점, 임직원 할인을 통한 현금 캐시백 제공은 피고 회사의 할인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피고 B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B 개인 계좌로 물품대금 전부를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의 거래행위는 외형상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첫 방문고객에게 거액의 현금 캐시백 제공을 제안하면서 정상 매매가를 지급받은 후 임직원 할 인을 통해 현금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의 혜택 및 물품대금을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의 거래는 극히 이례적임에도 원고는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바, 피고 B의 행위가 피고 회사의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
- 3) 설령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책임은 3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 3.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33,318,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3,3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2. 3.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3.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1) 사무집행관련성
- 가) 관련 법리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

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① 피고 회사는 'D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전자제품 판매를 위해 고용한 직원으로서, 원고에게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피고 B이 'D매장' 직원으로서 원고에게 전자제품을 판매한 행위 자체는 그 거래가 피고 회사의 정도경영방침 및 할인 정책에 부합하는 구매 절차인지에 관계없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전자제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이상, 위 돈이 피고 B의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외형상 '전자제품 판매'라는 피고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에 해당함은 마찬가지다.
- ② 피고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할인',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캐시백, 포인트 적립을 통한 할인'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 B은 임직원 할인가와 정상판매가 사이의 차액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할인 혜택을 원고에게 제안하였는바, 고객에게 임직원 할인가로 공급하면서 캐시백 방법으로 할인해주는 형태의 이 사건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로서 피고 회사의 사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오로지 피고 B 개인과 거래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 B의 임직원 할인을 이용하기 위해 피고 B 본인이 구매하는 것처럼 보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 B 개인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만을 들어 사무집행관련성이 없는 피고 B과의 개인적인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2) 원고의 고의·중과실

### 가) 관련 법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고, 한편,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

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이 법원의 대전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 ① 피고 B은 원고에게 "품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얘기하는 등 본사를 통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전산이미지를 보여주면서 할인판매 대상이 되는 모델명을 알려주고 주문정보에 관한 화면을 찍은 사진을 원고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 ② 또한 원고가 물품대금을 피고 B에게 송금한 뒤 곧바로 이체내역을 요구하자 피고 B은 위 대금이 그대로 'G<sup>1)</sup>'로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이체내역 화면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고, 피고 B은 문자메시지로 원고에게 무료배송 진행현황 전산 화면을 촬영하여 보내주었으며, 전산시스템을 통한 인증번호 전송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가전제품 배송이 오지 않아 피고 B에게 물어보자, H이라는 자로부터 "내가 물류 담당자인데, 문제가 생겨서 죄송하다. 금방처리해주겠다"는 내용의전화를 받기도 했다.
- ③ 피고 회사의 판매 직원 행동지침(을 제1호증) 등의 내용은 피고 회사와 직원 사이 내부적인 지시사항에 불과하며, 직원이 방문 고객들에게 정도경영방침 안내문을 직접 설명해주지 않는 이상고객들이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정도경영방침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경우 피고 회사에 위와 같은 조치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일뿐 원고가 위 내용을 실제 안내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④ 원고가 매장을 방문하기 위해 피고 B에게 물어보면 피고 B이 답장을 늦게 하거나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저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 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B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한 거래 과정에서 원고가 매장에 방문하여 진위를 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과실을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의무를 결여하였다거나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⑥ 또한 원고가 피고 B에게 이사 예정일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실제 이사를 가기 위해 전자제품을 구입할 의도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려한 것으로 보일뿐 공평에 반할 정도로 부정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거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의 행위가 피고 회사의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이를 모른데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1)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매장이 아닌 피고 B과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정상가에 대한 배율을 높일수록 현금 캐시백을 많이지급받게 되는 방식의 할인 혜택 및 직원 개인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전자제품 판매 방식에 비추어 이례적임에도 원고는 피고 B의 말만 믿고 피고 회사 등에 별다른 확인을 해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과실은 원고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 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 B의 업무 내용과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피고 회사가 직원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못한 책임의 정도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학이 타당하다.

### 2)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B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 33,318,000원 중 13,327,200원(= 33,318,000원 × 4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2. 3. 4.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성대

#### 1) 갑 제5호증 6쪽,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식별 불가